

# 온라인투표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기원 정관 제10조 및 원장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국기원 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원장선거"라 한다)에서 "온라인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온라인투표"란 선거인이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한 기표방식을 취하지 않고, 대한민국 또는 해외(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인터넷 기반의 개인용 컴퓨터와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를 이용한 투표방식으로 진행되는 투표를 말한다.

② "온라인투표 시스템"이란 "온라인투표" 시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국기원이 제공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투표 솔루션을 말한다. <개정 2022. 5. 27.>

③ "본인인증코드"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선거인에게 송신하는 개인 식별 번호를 말한다. <개정 2022. 5. 27.>

**제3조(적용범위)** ① 온라인투표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관, 원장선거관리규정에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따르며, 필요에 따라 별도세칙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관 제1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원장선거를 위탁할 경우 원장선거에 관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이 정하는 바와 국기원 정관, 원장선거관리규정이 배치될 경우, 상위 규정을 따른다.

**제4조(온라인투표 시행의 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5. 27.>

② 제1항의 시행 여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미시행 사유를 국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5. 27.>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투표할 선거인 대상과 제9조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대상을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7.>

## 제2장 소견발표 등

**제5조(선거운동 기간)** 제8조에 따라, 온라인투표 기간을 1일 이상으로 지정할 경우, 선거운동은 대한민국 시각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온라인투표 시작일 전일 자정까지로 한정한다.

**제6조(소견발표)** 원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투표에서의 소견발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국기원 또는 특정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하에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소견발표 영상을 녹화촬영할 수 있으며, 해당 후보자 1인만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7.>
2. 녹화촬영장소, 녹화촬영장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며, 후보자측이 제공한 녹화촬영장비 등은 사용할 수 없다.
3. 후보자는 제1호의 소견발표 영상 녹화촬영 2일전까지 소견발표 대본(국문, 영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연설 또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고, 전체 영상의 재촬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소견발표 영상의 녹화촬영을 중단하고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소견발표 영상 녹화촬영 후 후보자가 제공하는 영문 대본의 자막 처리와 해당 영상의 시작화면 및 종료화면 등의 삽입을 제외한 별도의 편집 없이, 국기원 홈페이지 또는 국기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일 3일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소견발표 녹화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6. 후보자가 제1호의 소견발표 영상 녹화촬영일자에 자신의 순서가 될 때까지 녹화촬영 장소에 미도착하였거나, 제3호의 대본을 기한 내에 미제출할 경우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제9조의 투표소에서는 선거일 당일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며, 별도의 소견발표는 시행하지 않는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행방법 이외는 원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를 준수한다.

## 제3장 온라인투표 및 투표소 설치

**제7조(온라인투표 등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장선거관리규정 제36조와 본 규정 제4조에 따라 온라인 투표를 한다는 사실과 온라인투표 기간을 14일 이상 국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5. 27.>

② 제1항의 공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 공고해야 한다.

**제8조(투표 기간)** ① 온라인투표 기간은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해 1일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7.>

② 삭제 <개정 2022. 5. 27.>

**제9조(투표소 설치)** ① 온라인투표를 시행하는 선거에서는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선거인을 위한 현장 투표소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인의 투표참여 촉진 및 선거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대한민국 내 현장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7.>

② 제1항의 투표소에는 제2조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탑재한 개인용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를 사용할 수 있는 기표소를 비치하여 선거인이 기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장소와 개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2. 5. 27.>

**제10조(유효, 무효, 기권, 불참)** ① 온라인투표에서의 "유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이 제11조 제1항의 일련의 투표 과정 중 기표란의 후보자 또는 찬성·반대에 올바르게 기표한 경우

② 온라인투표에서의 "무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이 제11조 제1항의 일련의 투표 과정 중 온라인투표 참여 의사를 표명한 후, 기표란에 기표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13조 제8항 등의 사유로 제12조 제3항의 후보자 선택 표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표시, 기권 표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온라인투표에서의 "기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이 제11조 제1항의 일련의 투표 과정 중 기표란의 기권에 기표한 경우

④ 온라인투표에서의 "불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이 제11조 제1항의 일련의 투표 과정 중 본인인증코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2. 선거인이 제11조 제1항의 일련의 투표 과정 중 본인인증코드를 입력 후, 참여에 대한 가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3. 선거인이 제11조 제1항의 일련의 투표 과정 중 본인인증코드를 입력 후, 온라인투표 불참 의사를 표명한 경우

## 제4장 온라인투표 시스템 및 관리

**제11조(투표 방법)** ① 선거인은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개인용 컴퓨터로 수신된 온라인투표 시스템의 인터넷 주소(URL)로 접속하여 본인인증코드 입력과 온라인투표 참여 의사를 표명한 후, 투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본인인증을 위해 온라인투표 개시 시각 전까지 본인인증코드를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 송신하며, 필요에 따라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중 택일하여 송신할 수 있다.

**제12조(투표 화면)** ①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0조를 적용하여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선거인의 본인인증코드 입력 및 온라인투표 참여 여부 선택 화면, 기표화면, 투표 성공 여부 확인 화면, 전체 투표 결과 확인 화면 등으로 구성된다.

② 투표화면은 원장선거관리규정 제33조를 준수하여 선거인이 명확히 기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온라인투표인 점을 감안하여 선거인의 권한 보호를 위하여 투표화면 내 기표란에 후보자 선택 표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표시 외에 기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모든 투표과정이 종료되면 마지막 화면에 선거인이 본인의 투표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⑤ 선거인이 전체 투표 종료 후 투표 결과를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3조(온라인투표 시스템 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 시스템의 실행 및 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 또는 행정정보조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자 계정을 부여하여 해당 온라인투표를 관리하게 한다.

③ 제2항의 담당자는 투표 생성, 투표 과정 관리, 선거인 입력, 선거 종료 후 자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2조 제3항에서의 선거인이 투표화면 내 기표란에 표시한 결과값은 온라인투표 시스템 상에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다.

⑥ 온라인투표 시스템에 접속한 개인용 컴퓨터와 이동통신단말기의 IP주소 등 관리자 및 선거인의 모든 접속과 작업 기록에 관한 로그파일을 온라인투표 시스템 상에 남기고, 선거가 완료된 후 해당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서명을 한 후 선거 종료 후 1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⑦ 투표 기간 중에는 투표 진행 경과 확인, 최종 투표 결과 확인, 오류 해결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온라인투표 시스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관리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자 측의 참관 하에서 온라인투표 관리자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와 내용, 참관인의 성명 등을 문서로 기록하고 선거 종료 후 1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⑧ 온라인투표 진행 중 선거인 측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 개인용 컴퓨터와 이동통신 단말기 오작동 등의 사유로 투표가 중단되는 경우 중단 시점까지 온라인투표 시스템 서버에 반영된 결과까지만 유효하다.

**제14조(개표 결과 공표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개표 즉시 개표 결과를 작성, 공표하고 봉인하여 보관한다.

## 제5장 보 칙

**제15조(위반행위)** 온라인투표에서는 관계 법령, 정관, 원장선거관리규정에 정한 것 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공정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원장선거관리규정 제28조 및 동 규정 제4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온라인투표 시스템의 인터넷 주소(URL)를 이용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기와 전자우편 정보 및 본인인증코드 등을 탈취하는 행위
2. 선거인의 신분확인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3. 선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인의 투표 과정이나 투표 결과를 확인하거나 폭행·협박·위력·위계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투표하게 하는 행위
4.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인이 타인이 온라인투표 시스템의 인터넷 주소(URL)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이동통신단말기와 전자우편 정보, 본인인증코드 및 신분확인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제16조(그 밖의 사항)** 원장선거와 관련해 국기원 정관, 원장선거관리규정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원장선거를 위탁한 경우 협의해 결정한다.

**제17조(언어 해석)** 이 규정 및 이 규정 관련 각종 문서의 국문(한글) 원문과 영문 원문이 불일치하거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한글) 원문이 우선한다.

**제1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제정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따른 첫 원장선거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정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온라인투표 관련 사항은 유효하며, 재차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부 칙 <개정 2022.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